

#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씨티은행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운용하는 첨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을”이 판매대행(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업무범위)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3 조(업무협조)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②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번호로 전자시스템(증권예탁결제원 시스템 포함),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4 조(준수의무) ①“을”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관 기관 및 감독당국의 요청이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와 같은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③“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감독기관의 명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 조(판매창구의 분리) “을”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1 명 이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7조(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①“을”은 “갑”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없다.

②“을”은 “갑”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 등에 간섭하지 못하며, “을”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 증권 등의 매입을 “갑”에게 요구하거나 증권 등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갑”의 자산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은 “을”, “을”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선전물의 사전심사 신청) ①"갑"과"을"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게시 배포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의 투자광고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광고계획신고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사전에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사신청에 대하여 협회의 적격통보를 받기 전에는 광고선전물을 게시 배포할 수 없다.

제 9 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 1 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 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이 없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추가약정) ①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갑"과 "을"이 첨부된 위탁판매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추가 또는 변경할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첨부된 기재된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미친다.

제 11 조(세부사항) ①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 장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12 조(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준거문서) 본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 국문본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15 조(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 ① “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집합투자규약을 “을”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갑”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일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년 4 월 2 일

집합투자업자(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번지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을)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하 영 구



첨부 :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1 부, 끝.



## 집합투자기구 목록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3.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4.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위탁판매 세부업무 협약서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씨티은행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 )년 ( )월 ( )일자로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업무협약서는 “갑”과 “을”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서와의 관계) ①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서에 정의된 용어는 세부업무 협약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③계약서 및 세부업무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협약서가 우선한다.

제 3 조 (대행 표시) “을”은 “갑”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광고, 안내문 등을 포함한 대외서류에는 “갑”이 집합투자증권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 다만, “을”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 분담) ① 판매계약서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은 신탁재산의 운용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을”은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기타 관련계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추가적인 관계도 없으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업무에 대하여 참여 또는 지시할

권한이 없다.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을 대리/대표하거나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③ “을”은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갑”은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갑”이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혹은 그와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청구,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을”에게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제반 법률비용포함)를 배상한다(투자자가 제기한 청구를 포함함). 다만, 그러한 손해 등이 “을”, “을”의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은 투자자에 대한 “을”의 위탁판매활동에 대하여 “갑”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은 본 계약 및 그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혹은 그와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한 청구,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갑”에게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제반 법률비용을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투자자가 제기한 청구를 포함함). 다만, 그러한 손해 등이 “갑”, “갑”의 이사, 직원이나 대리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여 야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갑”은 “을”이 “갑”에 대한 통지 없이도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 타 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탁판매 및 마케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 ⑤ “갑”과 “을”은 관계법령, 집합투자규약, 감독당국의 명령과 지침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5 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① “을”은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수탁회사에게 납입한다.

② “을”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설정일자, 집합투자기구명,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집합투자기구 설정의뢰서를 설정당일에 “갑”에게 송부(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포함)하여야 하며, “갑”은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자, 집합투자기구명,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집합투자기구

설정통보서를 설정당일에 “을”에게 송부(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포함)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을 통한 “갑”의 승인 후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설정내역을 정정할 수 없다. 단, 정정요청 사유가 정당하고, “을”이 “갑”에게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그 정정을 위해 협조한다.

제 6 조(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 ① “을”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의 매각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을”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을”은 이를 환매청구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갑”이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해지 시, “을”은 영업시간 중에 “갑”과 유선으로 협의한 후 증권예탁결제원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시스템을 통해 일부 해지를 청구한다. 동 시스템을 통한 “갑”의 승인 후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내역을 정정할 수 없으며,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한다.

제 7 조 (결제) ① “갑”과 “을”은 지정 은행 계좌를 통해 설정,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결제한다. 그러나 “을”과 수탁회사 간의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는 “갑”, “을”과 수탁회사 간의 사전 협의에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설정될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와 금액을 “갑”에게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 후, “을”은 한국은행 전신망(Bank of Korea Wire) 또는 계좌간 이체를 통해 설정요청이 이루어진 날의 익일에 자금의 결제를 위해 지정된 수탁은행에 개설된 “갑”의 계좌로 직접 설정대금을 납입한다.

③ “을”은 환매요청이 이루어진 날의 영업일 증권예탁결제원 거래시간 종료전에 환매요청좌수를 기재한 환매청구서를 “갑”에게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갑”은 한국은행 전신망(Bank of Korea Wire) 또는 계좌간 이체를 통해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일자에 “을”에게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탁회사에게 지시한다.

④ 제 8 조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환매절차에 관하여 “을”과 “갑”은 집합투자규약의 조건을 준수한다.

⑤ “을”은 해당 수탁은행에 납입하여야 할 환매수수료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갑”에게 통지하고, 한국은행 전신망(Bank of Korea Wire) 또는 계좌간 이체를 통해 자금 결제일의 익영업일에 수탁은행에 개설된 “갑”의 계좌로 직접 환매수수료를 송금한다.

제 8 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지) ① “갑”은 해당 투자신탁 신탁약관에서 정한 산정방식, 평가방식, 수수료 및 기준가격 산정 관행에 따라 기준가격을 계산한다.

② “갑”은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갑”이 정한 투자신탁회계처리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기준가 파일로 통지하여 등록한다. “을”은 증권예탁결제시스템에 이와 같이 등록된 펀드 기준가를 다운받아 “을”의 전산에 업로드한다. 다만, 관련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통지 당일 오전 9 시 이후에 기준가 정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한 후 기준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해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방법에 따라 기준가가 통지될 수 있다.

수신처	팩스번호	대체 팩스번호
“갑”	02-724-7475	02-724-7473
“을”	02-2004-1699	02-2004-1024

제 9 조(판매보수)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갑”은 제 1 항의 판매보수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인출일에 “을”에게 지급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자료제공) ①“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1 조에 의거하여 “을”이 투자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자의 확인을 표기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재산 편입내역을 “갑”과 “을”이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②“갑”은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③“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가능한 범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결산내역이나 상환내역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⑤“을”은 “갑”의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 11 조 (기타 업무협조) ① 해당 투자신탁의 지속적인 위탁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업무협조를 한다. 이러한 지원과 업무협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갑”은 투자목적, 투자지침 및 투자위험을 명시한 해당 투자 설명서(“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투자설명서는 한국의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 한다. “갑”은 충분한 수량의 투자설명서와 추가적인 개정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갑”이 부담한다.

2. “갑”은 판매대상 투자신탁, “갑”의 운용방식과 운용능력 및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기재한 일반적인 판매자료(“판매자료”)를 작성한다. “을”은 판매자료가 원리금손실위험의 공시에 관한 현행 감독 규정 및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장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이나 보장도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3. “갑”은 “갑”에 의해 작성, 준비되거나 승인된 투자설명서, 판매자료 등이 중대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투자설명서, 판매자료 등에 기재되도록 요구되어지거나 또는 해당 투자설명서, 판매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당해 상황에서 고객에게 오인을 불러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대한 사실의 기재가 생략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갑”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즉시 관련 투자설명서, 판매자료 등에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 및 해당 투자설명서, 판매자료 등에 기재되도록 요구되어지는 중대한 사실의 기재의 생략 또는 해당 투자설명서, 판매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당해 상황에서 고객에게 오인을 불러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대한 사실의 기재의 생략을 고지 및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고지 및 수정은 “갑” 또는 “갑”의 집합투자증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건이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지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5. “갑”은 “을”의 판매담당직원에 대한 상품교육의 제공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매년 최소 2 회 이상 제공한다.
6. “갑”은 “을”의 현재 혹은 장래 고객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매년 최소 2 회 이상 제공한다. 투자자교육의 주제 및 일정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7. “갑”은 판매직원의 투자신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월 각 투자신탁별 월 운용보고서를 작성한다. 월 운용보고서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 배포용으로 적합한 표현과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 수익률 및 동 기간 동안의 비교 벤치마크 수익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8. ”갑”은 “을”이 고객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갑”과 “을”이 합의한 주기 또는 일정별로 해당 보유자산 내역서를 제공한다. 다만, 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9. “갑”은 분기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한다. 분기 자산운용보고서는 “을”이 제공한 성과 분석 개요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 배포용으로 적합한 표현과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0. “갑”과 “을”은 모든 종류의 마케팅 자료를 검토하고 마케팅 자료를 “을”의 판매활동에 사용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 시 투자신탁의 판매현황, 투자자 유형 자료 분석, 계좌 수, 평균계좌규모, 보유기간, 판매성과 및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갑”은 “을”과의 협의를 거쳐 오로지 투자신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동 정보를 활용한다.

③ “갑”과 “을”이 주고받은 모든 자료, 대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신은 비밀로 취급된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또는 관계당국 이나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내용이나 자료도 제 3 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 각각 상대방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비밀 자료의 누설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본 계약 및 판매계약서에서 정한 이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동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본 조항에 따른 각자의 의무가 본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존속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 ⑤ “갑”과 “을”은 각자의 저작권, 등록상호,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보유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상대방의 저작권, 등록자산, 상표, 약어, 유사어 또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광고, 선전, 공고 또는 기타 인쇄물에서 상대방을 언급할 수 없다.
- ⑥ 양 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당사자들간의 사업관계를 다룬 모든 신문기사나 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조율한다.

제 12 조 (성과검토 및 조사) “갑”은 “을”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성과 검토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반적인 투자전략수익률,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벤치마크 및 변동성 및 위험에 관한 업계표준 통계수치 대비 성과에 관한 검토가 포함된다. “을”은 이러한 검토를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3개월 이전의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청산, 파산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의 신청, 본 계약서 상의 당사자 의 의무수행을 위한 인가의 취소나 폐지 등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혹은 본 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고, 상대방이 당사자일방의 시정 요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은 판매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해지된다.

③ 본 계약의 해지 시 “을”은 동 해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환매 또는 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수수료 및 보수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④ “갑”과 “을”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이 본 계약해지일 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전부 해지되거나 신탁원본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계약서 및 본 세부업무 협약서의 규정 중 당사자간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4 조(업무처리) 본 세부업무 협약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각각 “갑”과 “을”을 대표하는 위탁판매관련부서장 또는 해당업무부서장 명의로 한다.

제 15 조(기타)

②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클래스 및 그 범위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을”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신뢰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음과 본 거래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 법령을 위반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동의한다. 본 조항을 한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부담하게 된 직접적인 손실, 비용, 벌금이나 과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2일

집합투자업자(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을)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주식 한국씨티은행  
회사 은행장 하영구

